

(재)수원문화재단 2021년 종합감사 결과보고

(재)수원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기관 운영의 개선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충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I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수원시 감사규칙」 제4조(감사의 종류) “종합감사”
- 감사반 편성 : 감사관 등 7명
-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범위
(재)수원문화재단	'21. 4. 19.(월) ~ 5. 4.(화) [12일간]	'19. 2. 1. ~ '21. 3. 31.

II 감사중점 사항

- 예산·회계·재산분야 전반
- 반복 지적·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 재단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등 시설물 전반
- 각종 문화행사 추진 및 공연기획 운영 적정 여부

III

감사결과

□ 감사결과 처분요구 총괄표

- 감사결과 [표]와 같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음

[표]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원)

기관	합 계	행정상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시정	주의	통보	개선	기관 경고		
(재)수원문화재단	00	-	0	-	0	0	시정 0 (00,000,000)	훈계 0 (0)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내용

잘된 점

-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성문화제 및 연극축제 등 각종 기획·창작공연 등이 중단되었으나 비대면 관람시대에 대응하는 <예술로 다가서기>의 일환으로 베란다 1열 콘서트, 오페라 하이라이트 영상화 사업 등 지역 문화진흥 사업과 예술단체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는데 기여하였음

미흡한 점

- 재단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제규정(인사규정, 내규 등)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사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였고 예산집행 및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재단의 자체적인 내부 통제기능이 미흡하였음

IV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사례 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 부적정

- ▶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0회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평정자와 확인자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경력평정서를 관리하거나, 교육훈련 평정 시 교육훈련실적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00점 만점에 0점 부여
- ▶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00명을 포함하여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정하고서 승진임용(안)을 인사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함으로써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00명 중 0명이 승진 임용

⇒ 조치할 사항

앞으로 경력평정서를 평정자와 확인자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관리하거나 훈련 성적평정을 교육훈련실적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경고**

[사례 ②]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위원의 최소인원과 자격요건 등 미비

- ▶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위원의 최소인원과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0회에 걸쳐 사실상 내부인에 해당하는 재단 이사와 감사를 외부위원으로 간주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

⇒ 조치할 사항

앞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재단 「인사규정」 중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최소 구성인원,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신설(정비)하도록 **개선요구**

[사례 ③] 정관변경 사항 등기 미이행

- ▶ 「민법」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6. 8. 31. 경기도로부터 정관변경 허가 통보를 접수한 후 2021. 5. 4. 현재까지 정관변경 등기 미이행

⇒ 조치할 사항

앞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정관 변경사항을 변경등기하고 정관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장기간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사례 ④] 자체 규정 및 내규 미정비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서 요구한 ① 징계감경 제한규정 추가, ②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③ 채용비리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규정을 자체규정에 장기간 미반영
- ▶ 「인사규정 시행 내규」와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상 금품·향응수수와 관련한 징계양정을 서로 상이하게 규정

⇒ 조치할 사항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서 요구한 사항 중 미반영된 규정을 자체규정에 반영하고, 「인사규정 시행 내규」와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상이하게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도록 **개선요구**

② 계약관리 분야

[사례 ①] 물품구매 검수 및 준공처리 업무 불철저

- ▶ 「수원시 0000」 시민 홍보 소책자 발간 계약을 추진하면서 물품 검수 시 실제로는 성과품(책자)을 납품받지 않은 채 검수를 완료한 후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0개월 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성과품을 수령

⇒ 조치할 사항

성과품을 납품받지 않은 채로 물품 검수 및 준공처리한 관련자 0명 **혼계요구**

[사례 ②] 000 0000 0000 준공정산 부적정

- ▶ 「000 0000 0000」 준공정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공정 시공내역과 폐기물처리 내역을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에 계상된 전액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0,0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

⇒ 조치할 사항

시공하지 않은 경계석 철거 및 재설치 공사비와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처리비를 합한 0,000,000원 중 지연배상금 정산액 00,000원을 제외한 0,000,000원을 회수 하도록 **시정요구**

③ 예산·회계 분야

[사례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업무 부적정

- ▶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계 00,000,000원을 지급하고도 그 직원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권한을 대위하여 신청하지 않아 자체예산 낭비

⇒ 조치할 사항

통상임금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직원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는 직원(0명)의 권한을 대위하여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00,000,000원)를 신청하여 회수 하도록 **시정요구**

[사례 ②]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소홀

- ▶ 2019년 행사보조 및 무대지원 등으로 고용한 일용근로자 000명 중 00명은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한 반면, 0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별 담당자가 보험가입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 조치할 사항

앞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사례 ③] 행사 출연료 집행 부적정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 행사의 출연료를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000건 계 0,000백만 원을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

⇒ 조치할 사항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사례 ④]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2019. 2. 1.부터 2021. 4. 30.까지 출장시간 중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상의 결재 내역과 여비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출장시간 내에 조기 복귀하였거나 출발 지연된 출장이었는데도 당초 출장명령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등 관내출장여비 00건 계 000,000원을 잘못 지급

⇒ 조치할 사항

「수원문화재단 여비규정」 등 관련규정과 다르게 잘못 지급한 관내출장여비 000,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